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31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김예지・김선교・고동진

김소희 · 최수진 · 박준태

박덕흠 • 정성국 • 우재준

최형두 · 서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 고등교육기관임. 한예종은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인 19위를 달성하여 아시아전체 대학 중 1위를 차지하였음.

이와 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현재 운영중인 예술전문사 과정에 대한 석사·박사학위가 인정되지않아 창의적 예술인재의 양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술영재 발굴 및 창조적인 전문예술인 양성을 도모하고 한국예술종 합학교가 세계적인 예술인재 양성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인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다른 예술 대학 또는 학과와 협력하여 예술 관련 학술·학문·교육 연구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는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 및 소속 학과를 두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대학원을 둠(안 제8조 및 제9조).
- 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예술영재교육을 실시함(안 제15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인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둔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예술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예술학교의 설립·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등교육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운영의 원칙) ① 예술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 본다.
 - ② 예술학교는 다른 예술 대학 또는 학과와 협력하여 예술 관련 학술·학문·교육 연구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예술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총장) ①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 ③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6조(교직원 등) ① 예술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직원 및 조교를 둔다.
 - ②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 ⑤ 그 밖에 교원·직원·조교·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학교규칙)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각 원) ① 예술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 원 및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각 원 및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 ③ 각 원의 장은 총장의, 소속 학과의 장은 각 원의 장의 명을 받아해당 각 원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제9조(대학원) ① 예술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창조적인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학생의 정원) ① 각 원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②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가 각 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1조(입학자격) ① 예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② 예술학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술학교의 각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예술학교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각 원 및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총장은 제11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 ② 그 밖에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수업연한) ①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예술학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4조(학위의 수여)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 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제15조(예술영재교육) ① 예술학교는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예술연수과정) ① 예술학교는 사회예술교육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 ② 그 밖에 예술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7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예술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교육시설 지원) 총장은 예술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예술관련 시설의 사용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교육재정 지원) ① 국가는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 ②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제20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한다.
 - ② 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로 본다.
- 제3조(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 제4조(한국예술종합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직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력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예술전문사증서를 수여받은 자는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 제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승계한다.